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22.(일) 11:00 이후(11. 23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20.(금)

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표시 … 실제 구매비용 한눈에 확인 「자동차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차량가격에 각종 수수료 더한 총비용 공개…소비자 가격 비교 쉬워진다
-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 제한… 매매업자 책임 강화
- 판매용 차량 보관·관리부담 완화, 점검 책임주체 명확화 및 출장점검 허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**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온라인 광고에서 확인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매매업자가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** 하는 내용 등을 담은 「**자동차관리법 시행령**」, 「**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**」 및 「**자동차등록규칙**」 **개정안**을 **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**한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**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**에서 **국가 정상화 과제로** 발표한 **“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”***의 **후속조치**다.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**법률 개정 없이 추진**할 수 있는 **과제부터 신속히 개선**할 계획이다.

* ❶투명한 가격표시제, ❷성능·상태정보 신뢰성 강화, ❸매매업자의 하자보증책임 강화, ❹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

□ 이번 **개정안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중고차 광고에 실제 구매비용을 모두 표시한다.

○ **그동안 중고차 거래**에서는 **광고에 차량가격만 표시**하고 **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**해, 소비자가 **예상보다 많은 비용**을 부담하거나 **분쟁이 발생**하는 문제가 있었다.

○ 앞으로 **중고차를 광고할 때**는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합한 **총비용을 표시**해야 한다. 알선수수료, 등록신청대행 수수료, 관리비용, 성능·상태점검책임보험료(할인·할증률 포함) 등 **항목별 금액도 함께 안내**해야 한다(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).

* (예) **총비용 1,060만원**(차량가격 1,000만원, 관리비용 40만원, 등록신청대행수수료 10만원, 성능보험료 10만원(10% 할인))

- **할부 판매로 광고**하는 경우에는 **현금가격**(총비용 포함), **매회 할부금액, 지급횟수, 할부이자율 및 계약금**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. 할부금액이나 할부이자율이 **확정되지 않은 경우**에는 **그 범위를 표시***해야 한다.

* (예) 할부금액 20만원~25만원, 할부이자율 8%~12%

- 또한, 성능·상태점검책임보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**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에 보험료와 할인·할증률을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**하고,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**보험료 지급 시점에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**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○ 아울러, 매매업자가 **자신이 소유한 차를 직접 판매**하는 경우 **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** 한다. 또한, **관리비용**은 소비자가 **총비용 표시제**를 통해 **비교·선택**할 수 있도록 하면서 **시장 기능**에 따라 **자율적으로 결정**될 수 있게, **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**을 **유발**해 **온 단서 규정**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초과 제한)은 **삭제**한다.

○ 이번 개정으로 **소비자는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**부터 **실제 구매비용을 확인**하고, **차량별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**할 수 있게 된다.

❷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을 제한한다.

○ **현재 중고차 매매계약 과정**에서 성능·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해 **매매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약관이 사용될 우려**가 있다.

○ 이에 매매업자가 **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**이나 **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**을 **사용**하지 **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(자동차양도증명서)**에 관련 규정을 명시한다.

* 「**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**」은 고객에게 **부당하게 불리한 조항**이나 **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·제한하는 조항**을 **무효**로 규정

○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서의 **불리한 조항** 때문에 **정당한 권리를 제한** 받는 일을 **예방**하고, **매매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유도**할 계획이다.

❸ 중고차 매매업자의 차량 보관 및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○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차량의 **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**해야 하는 **의무를 폐지**한다.

○ 또한, **불법주차 방지**를 위해 매매업자가 전시시설 외에 **판매용 차량**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**보관시설을 설치**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○ 아울러, **판매용 차량은 전시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두고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**는 기존과 같이 **전시장과 사무실**로 제한하며, 이러한 **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**한다.

* (**1차위반**) 20만원→**50만원**, (**2차위반**) 60만원→**100만원**, (**3차위반**) 180만원→**200만원**

○ 이를 통해 매매업자의 불필요한 관리 부담은 줄이면서도 차량 보관·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.

❹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장점검을 허용한다.

○ 현재 점검업체가 가입한 **협회에 부여된 법상 점검자 지위**를 **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변경**해 점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, 개별 점검업체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.

○ 또한, 인근에 점검업체가 없어 점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점검업체가 없는 **시·군·구**에서 **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방식의 점검을 허용**한다. 출장점검에도 **기존과 동일한 점검항목과 기준이 적용**된다.

□ 한편,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. 성능·상태정보의 신뢰성 강화,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,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**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**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**은 "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**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**하고, **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,

○ "법률 개정이 필요한 **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**해, **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**을 만들어 가겠다"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s://www.molit.go.kr)의"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"에서 11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, 우편*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관리과	책임자	과 장 조태영 (044-201-3855)
		담당자	서기관 김세묵 (044-201-3856)
			주무관 최혜영 (044-201-385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